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VII): 분쟁 처리 및 해산·청산

황동언 /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최근의 경제 위기 속에서도 남북한은 상호 경제 교류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4월 경험 활성화 조치를 발표하는 등 남북 경험 활성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지난해 9월 북한최고인민회의에서는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에 재추대되고, 동시에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 경제 분야에서 개혁·개방의 기반이 다소 마련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지난해 11월 금강산 관광 사업이 성사되는 등 남북한 경제 협력은 점차 활성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즉, 단순 교역에서 더 발전하여 위탁 가공 및 투자 협력 사업으로 경제 협력의 양적·질적 성장의 가능성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때를 즈음하여 본 지는 북한의 외국인 투자 관련 법안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불완전한 형태이긴 하지만, 상당수 제정되어 있는 북한의 외국 투자 관련 법안을 분석하고 사전에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애매모호한 법안 내용을 명확히 하여, 향후 경제 협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장애물들을 미리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 법안들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사전에 분석하는 것은 향후 남북한 경제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한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외국인 투자 관련 법안의 내용을 ① 기업의 설립 및 출자제도, ② 노무 관리, ③ 경영 활동, ④ 토지 관리, ⑤ 금융(외환·보험), ⑥ 조세, ⑦ 분쟁 처리 및 해산·청산 등 크게 일곱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일곱번째인 분쟁 처리 및 해산·청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對 북한 투자에서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투자에 의한 경영 활동이 악화되었거나 경영 과정에서 각종 분쟁들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일 것이다. 그리고 경영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최후의 선택으로서 합리적으로

기업을 정리하는 것이 가능한가도 역시 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북한에서의 기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처리 및 해산·청산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간단히 지적하고자 한다.

분쟁 처리

외국인 투자에서 비롯되는 분쟁은 해결 방식에 따라 크게 협의, 관할국의 중재, 사법적 재판, 제3국 중재 기구 또는 국제 분쟁 중재 기구에 의한 국제적 중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 분쟁은 분쟁 주체에 따라 투자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 투자 당사자와 국가 또는 국가 기구간의 분쟁, 투자 당사자가 속한 국가간의 분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분쟁 해결 방식으로 앞서 언급한 방식을 거의 모두 허용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법」 제22조에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의견 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분쟁 사건은 북한의 재판 기관 또는 중재 기관에서 해당 절차에 따라 심의 해결하며, 제3국의 중재 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다. 다음으로 분쟁 주체에 관해서 북한은 「외국인투자법」 제22조에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의견 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분쟁 주체를 투자 계약 당사자들로 한정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북한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은 협의에 의한 분쟁

해결 방식이다. 남북한 투자 당사자간의 대부분의 분쟁은 이사회를 통한 협의에 의해 해결될 가능성이 많다. 협의 방식의 장점은 분쟁 처리 비용과 기간의 측면에서 다른 방식에 비해 매우 효율적이라는 점이며, 또 북한이라는 특수한 상황¹⁾을 염두에 두면 그 효과는 훨씬 더 클 것이다.

2차적 분쟁 해결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중재 또는 재판 방식도 북한에서는 허용하고 있다. 중재 또는 재판의 구체적인 절차는 외국인 투자 관련 법규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舊합영법 시행세칙에 준거하여 북한의 민사 소송 절차 및 중재 사전 심의 절차에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²⁾ 그러나 북한에서의 중재 또는 재판은 제도 상의 미비로 인해 외국인 투자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할 것이다.

북한의 외국인 투자 관련법에서는 제3국에서의 중재를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많은 외국인 투자 관련 법규 중에서 제3국 중재와 관련하여 법 조항의 내용이 약간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합영법 시행규정에서는 당사자 합의에 의해 제3국 중재 기관의 중재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데 반해, 다른 많은 법규에서는 당사자

1) 현재 남북한간에는 분쟁 해결 등에 관한 투자보장협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동시에 북한의 중재·재판이 얼마나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인가가 불확실한 상태이다.

2) 舊합영법 시행세칙 제100조, 제101조에서는 재판·중재 방식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는 재판은 북한의 민사 소송 절차에 따라 하며, 중재는 북한의 중재 사건 심의 절차에 따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합영 당사자들은 민사 소송에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新합영법 시행규정에서는 삭제되었다. 삭제의 정확한 배경은 알 수 없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합의라는 문구가 없다. 둘째, 제3국 중재는 허용하는 데 반해, 국제 중재 기구에 의한 중재에 대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국제 중재 기구에 의한 중재 효력을 인정할지는 의문이다.

한편, 분쟁 처리와 관련해서 북한의 관련 법규들을 조항의 내용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차이점은 <표 1>과 같다.

해산·청산

합영 기업

합영 기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없을 경우 해산할 수 있다.

- ① 재판소의 기업 파산 선고, ② 존속 기간 만료, ③ 계약 의무 불이행 및 지불 능력의 상실, ④ 자연 재해와 같은 불가항력적 사유, ⑤ 이사회에 의한 기업 해산 결정, ⑥ 기업 창설 승인 또는 기업 등록 취소(합영법 시행규정 제135조) 등이다. 존속 기간은 합영 계약에 정한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합영법 시행규정 제130조). 그런데 주목할 것은 舊시행세칙에서는 존속 기간을 원칙적으로 10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新시행규정에서 이 규정이 생략되어 있다.

그리고 존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산 사유가 발생하면 기업 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허가 또는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해산할 수 있다. 이때 승인 기관의 허가를 받아 해산하

<표 1> 주요 외국인 관련 법 및 규정의 분쟁 처리 내용

	분쟁 해결	신소청원
외국인투자법	협의를 방법, 북한의 재판 기관 또는 중재 기관, 제3국의 중재 기관	규정 없음
합영법	협의를 방법, 북한의 재판 기관 또는 중재 기관, 제3국의 중재 기관	행정 기관의 지시 또는 일꾼의 행위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상위 기관에 신소청원 가능
합영법 시행규정	협의를 방법, 북한의 재판 기관 또는 중재 기관, 당사자 합의에 따라 제3국의 중재 기관	해당 일꾼의 행위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상위 기관에 신소청원 가능
舊합영법 시행세칙	협의를 방법, 북한의 재판 기관 또는 중재 기관, 재판은 북한의 민사 소송 절차에 따름, 당사자 합의에 따라 제3국의 중재 기관	합영 기업 운영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신소청원 가능
합작법	협의를 방법, 북한의 재판 기관 또는 중재기관	규정 없음
합작법 시행규정	협의를 방법, 북한의 재판 기관 또는 중재 기관	합작 기업과 관련한 해당 일꾼의 행위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신소청원 가능
외국인기업법	협의를 방법, 북한의 재판 기관 또는 중재 기관	규정 없음
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협의를 방법, 북한의 중재 기관 또는 재판 기관	북한의 해당 기관에 신소청원 가능
자유경제무역 지대법	협의를 방법, 북한의 재판 기관 또는 중재 기관, 제3국의 중재 기관	규정 없음

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해산되는 경우에는 재판소가 청산인을 임명하고 청산위원회를 조직한다(합영법 제44조).

합영 기업의 청산 재산은 청산 비용, 청산 위원회 성원들의 보수, 종업원들의 노동 보수, 기업소득세, 기업의 채무 순서로 처리하며, 처리하고 남은 재산은 합영 당사자들의 출자 몫에 따라 분배하여야 한다(합영법 시행규정 제146조).

합영 기업이 존속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그 기간이 끝나기 6 개월 전에 이사회에서 토의 결정한 다음 기업 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존속 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합작 기업

합작 기업에서는 존속 기간이 끝나면 해산되며, 존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 즉 ① 계약 의무 불이행 또는 불가항력적 사유, ② 당사자들의 기업 해산 합

의, ③ 기업의 파산 또는 합작 승인·기업 등록 취소 등의 경우 기업을 해산할 수 있다(합작법 시행규정 제111, 112조).

기타 청산 과정은 합영 기업과 거의 유사하며, 합영 기업과 차이가 나는 점은 존속 기간이 끝나 해산되는 경우 외국측 당사자가 투자한 재산은 공화국측 당사자의 소유가 된다는 점이다.

외국인 기업

외국인 기업은 ① 경영 기간 만료, ② 자연 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 ③ 경영 손실을 회복하기 곤란하여 투자가가 해산을 결심한 경우, ④ 외국인 기업 창설 승인서 및 기업등록증 취소, ⑤ 판결에 의한 해산 선고 등의 경우에 해산될 수 있다(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제66조). 그리고 외국인 기업이 법을 위반한 경우 기업을 중지 또는 해산시키거나 벌금을 물릴 수 있다(외국인기업법 제29조)고 규정하고 있다.

<표 2> 청산위원회의 임무

1. 채권자회의 소집 및 대표 선출
2. 기업의 재산과 공인을 위임받아 재산의 관할
3. 채권·채무 관계의 확정 및 재정 상태표와 재산 목록의 작성
4. 기업 재산에 대한 가치 재평가 및 청산안 작성
5. 거래 은행, 세무 기관, 기업 등록 기관에 기업의 해산 통지
6. 결속하지 못한 해당 업무의 처리
7. 세금 납부, 채권 채무의 정리 및 잔여 재산의 처리
8. 기타 청산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의 처리

〈표 3〉 외국인 기업의 해산·청산 절차

해산 절차	· 기업해산신청서 제출, 지대 당국 또는 대외 경제 기관의 해산 승인 · 해산 승인일(기업 해산일)로부터 10 일내 기업 해산 공개, 채권·채무자에게 통지
청산 절차	· 기업 해산 공개일부터 15 일내 청산위원회 위원 명단을 심사 승인 기관에 제출·합의 · 합의후 1 주일내 청산 착수 · 청산후 잔여 재산 총액이 투자한 등록 자본 초과시 초과분에 대한 기업소득세 납부, 심사 승인 기관에 청산보고서 제출, 기업허가증과 기업등록증 반납, 기업 및 세무 취소 등록 등으로 종료

한편, 외국인 기업은 청산이 끝나기 전에 재산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다(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제73조). 청산과 관련한 비용은 해산되는 외국인 기업의 남은 재산에서 먼저 지출한다.

문제점

분쟁 처리

분쟁 처리와 관련하여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는 처리 규정이 지나치게 단순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법 규정에서는 분쟁 처리와 관련하여 단순한 처리 방식만을 열거해 놓고 있을 뿐, 각 방식의 기본적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명시화시켜놓지 않고 있다. 또한 처리 방식 가운데서도 국제 기구의 중재에 대한 규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북한의 경우 「국가와 타국가 국민간의

투자 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일명 워싱턴 협약 또는 ICSID협약)에 가맹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 중재 기구의 중재를 허용하지 불명확한 상태이다.

둘째, 법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법 규정간의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표 1〉에서 본 것처럼 주요 투자 관련 법규에서도 분쟁 처리 및 신소청원에 대한 조항 내용의 차이가 나타난다.³⁾ 따라서 실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어떤 처리 방식이 적용될 수 있는가는 매우 애매하며, 북한 당국의 자의적 해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하나 「합작법」과 「외국인기업법」에서는 제3국 중재 기관의 중재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데 반해, 「외국인투자법」과 「합영법」에서는 관련 규정이 존재한다. 「외국인투자법」이 상위 법규라 한다면, 제3국 중재 기관의 중재는 모든 외국인 투자 기업에서 허용되는

3) 이외에도 자유경제무역지대 관련 법 및 하위 규정에서도 제3국 중재와 관련한 규정 명시 및 누락이 보인다. 또 특이한 것은 「자유경제무역지대 공업지구 개발 및 경영규정」에서는 다른 법규에는 없는 제3국 재판 기관에 의한 해결이 명시되어 있으며, 「대외경제계약법」에서는 북한 재판 기관에 의한 해결 방식이 누락되어 있다.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검증규정」에서는 분쟁 처리 방식으로 협의의 방식만을 명시하고 있다.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북한 당국의 자의성이 강하므로 기업 설립 계약시 및 설립 시 이에 대한 내용을 명시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舊합영법 시행세칙 제100조, 제101조에서 재판이나 중재가 북한의 민사 소송 절차 및 중재 사건 심의 절차에 따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합영 당사자들은 민사 소송에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으며, 중재의 경우 중재 원고와 피고는 중재원 명단에 없는 사람을 중재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新합영법 시행규정에는 이러한 조항이 삭제되어 있다. 상식적으로 재판이나 중재가 북한의 소송 및 중재 절차를 따른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명확한 형태로의 규정이 삭제되어 이전보다 내용이 오히려 불명확한 점이 존재한다.

셋째, 투자자에게 불리하거나 북한 당국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먼저 중재나 재판의 경우 북한의 실질적인 민사 소송 절차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더불어 중재나 재판이 일방적으로 북한에 유리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3권 분립이 이루어져 있는 국가와는 달리 북한에서는 엄격한 권력 분립이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법 기관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또한 중재 기관에 의한 분쟁 처리 방식에서 중재 기관은 재판소의 중재부와는 다른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 경우 북한 중재

기관의 성격 및 공정성에도 역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분쟁 처리에서 규정에 대한 북한 당국의 자의적 해석이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 법 규정에서는 제3국에서의 중재를 인정하고 있는데, 북한 당국은 실제 중재시 주권 면제를 주장함으로써 이의 집행을 기피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또 법 규정간의 불일치를 빌미로 북한 당국이 특정 분쟁 처리 방식을 강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해산·청산

문제점은 크게 불명확한 규정 상의 문제점과 투자자에게 불리한 규정 상의 문제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불명확한 규정이 상당수 존재한다. 합영법의 경우 舊합영법 시행세칙이 개정되어 합영법 시행규정이 새로 발표된 이후 애매모호한 규정이 어느 정도 시정되었다. 예를 들어, 감독 통제 기관의 기업 영업 중지 및 해산 사유 명시, 합영 기업의 원칙적 존속 기간 10년 명시, 합영 주관 기업의 청산위원회 감독을 위한 성원 파견 가능 규정의 삭제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불명확한 규정은 여전히 존재한다. 예를 들어, 청산 재산의 평가 및 분배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 외국인 투자 관련 법규에서는 청산 재산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전혀 없다. 그리고 청산 재산의 분배와 관련

해서는 합병법 시행규정에 청산 재산이 청산 비용, 청산위원회 성원들의 보수, 종업원들의 노동 보수, 기업소득세, 기업의 채무 순서로 처리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데 반해, 「합작법」이나 「외국인기업법」에는 아무런 규정도 없다. 따라서 합작 기업이나 외국인 기업의 경우 합병법의 분배 방식을 준용하는지 아니면, 다른 분배 방식을 따르는지 불명확하다. 이외에도 존재하는 불명확한 규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약서 등에 자세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절실하다.

다음으로 투자자에게 불리한 규정 상의 문제점이다. 예를 들어, 합작 기업의 경우 존속 기간이 끝나 해산시 외국측 당사자가 투자한 재산은 공화국측 당사자의 소유가 된다. 이는 투자자에게 매우 불리한 규정으로서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외국인 기업의 경우 기업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 북한 당국이 기업을 중지·해산시키거나 벌금을 물릴 수 있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기업 재산에 대한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맺음말

북한은 투자 촉진과 투자 보장, 분쟁 중재를 위한 국제 기구⁴⁾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 중

국·베트남 등에 비해 투자 보장에 대한 환경이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분쟁 해결 등의 투자 보장은 단지 「외국인투자법」 규정에 의존하는 일방적 투자 보장이나 계약에 의한 투자 보장에 그치는 수준이다.

따라서 북한 진출 기업은 투자 법규의 문제점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북한과의 계약시에도 계약 내용의 철저한 명기가 필요하다. 남북한간의 경제 협력에서 분쟁 발생시 중재를 통한 해결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향이 있으며, 남북한 당국간의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투자합의서나 계약서 작성시 각종 사항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정부도 제도적 차원에서 가장 확실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남북한간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는 데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편입시켜 국제적인 법 규범을 준수하도록 해야 하며, 가장 시급한 것은 남북한간 투자와 관련된 분쟁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경우 국제적인 분쟁 기구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⁵⁾이다. ㉞

4) 국제금융공사(IFC), 국제투자보장기구(MIGA),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등.

5) 북한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 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